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5가합535478(본소), 2016가합523779(반소) 판결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 구상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나2014121(본소), 2017나2014138(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5가합53547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변론 종결 2016. 10. 20.

판결 선고 2017. 1. 2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12,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7. 1.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0,534,4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확장)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30,541,9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 1) 원·피고, C, D, E은 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모 G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 2) F는 2003. 4. 18., G은 1999. 7. 10. 각 사망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1) C은 원·피고, D, E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3느합83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다. 위 사건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05브46) 법원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건물을 'H동 주택', 제2항 기재 토지와 건물을 'I빌딩', 제3항, 제4항 기재 토지와 건물을 'J빌딩', 제5항 기재 토지와 건물을 'K동 주택', 제6항, 제7항 기재 토지와 건물을 'L빌딩', 제8항 기재 토지를 'M 토지'라 하고, 이를 모두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아래와 같은 지분의 비율로 분할한다'고 결정하였고, 당사자들은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대법원 2007스10)하였으나, 2008. 1. 3.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	295,841,354 / 3,928,606,770
피고	700,941,354 / 3,928,606,770
C	1,092,941,354 / 3,928,606,770

원고	295,841,354 / 3,928,606,770
D	835,941,354 / 3,928,606,770
E	1,002,941,354 / 3,928,606,770

2)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순재산가액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중 '순재산가액'란 기재와 같은데, 이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채무 또는 보증금채무를 공제한 금액이다.

3) 한편, 상속개시 당시 J빌딩의 나머지 지분 6/7은 원·피고, C, D, E이 각 6/3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 및 조정 성립 등

1) 그런데 위와 같이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경매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I빌딩에 관하여는 2008. 2. 27., L빌딩에 관하여는 2008. 2. 26., M 토지에 관하여는 2008. 8. 1. 각 2003. 4. 1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각 원·피고, C, D, E이 각 1/5 지분씩 이전받는 것으로 일단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H동 주택은 그 이전에 다른 사정으로 이미 경매를 통해 처분되었다).

2) 그 후 원·피고, C, D, E은 2008. 9. 5.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합의서

2. 서울중앙지방법원 N 부동산임의경매1) 는 피고가 주관하여 원상회복시켜 취하시킨다(상기 경매를 취하기 위해 피고가 요구하는 서류에 원고, E, C, D은 적극 협조한다).

4.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1) 상속 부동산 및 가액은 <표1>을 기준으로 한다.

<표1>

J빌딩	18억
K동 주택 및 L	30억
I 빌딩	19억 5,000만 원
M 토지	2억 1,000만 원

(2) 구체적인 상속재산은 <표2>와 같다.

<표2>

J빌딩	2억 4,800만 원(보증금 6,000만 원 공제한 17억 4,000만 원의 1/7 지분)
K동 주택 및 L	30억 원
I 빌딩	12억 1,000만 원(보증금 3억, 대출금 및 연체이자 약 4억 4,000만 원 공제)
M 토지	2억 1,000만 원
합계 46억 6,800만 원	

(3) 상기인들의 상속지분 및 최종 상속분은 서울고등법원 2005브46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따라 <표3>과 같이 정한다.

<표3>

원고	3억 5,010만 원	7.5%
피고, C, D	31억 2,290만 원	66.9%
E	11억 9,500만 원	25.6%
합계	46억 6,800만 원	100%

(4)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상속인 E의 총 상속분(11억 9,540만 원2))에 관하여

a. E은 J빌딩의 상속재산(2억 4,800만 원)을 상속분으로 소유한다.

b. E의 총 상속분 중 위 a항을 제외한 차액 9억 4,700만 원은 J빌딩의 공동소유자인 원·피고, C, D 4인의 지분(총 가액 11억 9,2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단, 이때 발생하는 차액 2억 4,500만 원은 E이 현금으로 반환한다.

d. 상속부동산 중 I빌딩, K동 주택, L빌딩, M 토지의 E 지분은 원·피고, C, D에게 귀속된 후 배분된다.

② 원·피고, C, D의 각 상속분에 따른 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일반적인 상식에 입각하여 결정한다.

3) E은 이 사건 합의에 기초하여 원·피고, C,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1489호로

J빌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2. 6. 27.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E로부터, C은 9,160만 원을, D은 7,002만 원을, 피고는 5,872만 원을, 원고는 4,169만 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E에게 J빌딩의 각 7/35 지분에 관하여 위 당사자들 사이의 2008. 9. 5.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2. E은 원·피고, C, D으로부터 J빌딩의 각 7/35 지분에 관하여 위 당사자들 사이의 2008. 9. 5.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받음과 동시에 2012. 7. 31.까지 C에게 9,160만 원, D에게 7,002만 원, 피고에게 5,872만 원, 원고에게 4,169만 원을 각 지급한다.
4. E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35사건3) 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I빌딩, K동 주택, L빌딩, M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 기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E이 포기하는 위 공유지분은 위 2011가합635사건에서의 조정, 화해, 판결 등의 최종결과에서 정한 원·피고, C, D 사이의 비율에 따라 원·피고, C, D에게 귀속된다.
5. J빌딩에 부과된 제세공과금은 E이,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부과된 제세공과금은 원·피고, C, D이 각 부담한다.
- 4) 이후 E은 위 임의조정 조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J빌딩에 관한 원고·피고, C, D의 각 지분을 이전받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라. 공유물분할판결

1) C은 원·피고, D,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4), 위 법원은 C의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하여 2012. 10. 26. I빌딩, K동 주택, L빌딩, M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아래와 같은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105088)과 상고심(대법원 2014다6589)을 거쳐 2014. 4.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197,236,804,650 / 1,956,589,102,128
피고	468,929,765,826 / 1,956,589,102,128
C	731,177,765,826 / 1,956,589,102,128
D	559,244,765,826 / 1,956,589,102,128

2) 위 공유물분할판결에서 확정된 분할비율의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 원고 : 197,236,804,650/1,956,589,102,128 (약 10.0806%)

$$= 75/744 \{= 7.5/74.45\}$$

$$= (75 \times 2,629,824,062) / (744 \times 2,629,824,062)$$

$$= 197,236,804,650 / 1,956,589,102,128$$

○ 피고 : 468,929,765,826/1,956,589,102,128 (약 23.96%)

$$= \{66.9/74.47\} \times 700,941,354 / (1,092,941,354 + 700,941,354 + 835,941,354 \times 8)$$

$$= (66.9 \times 700,941,354) / (74.4 \times 2,629,824,062)$$

$$= 468,929,765,826 / 1,956,589,102,128$$

○ C : 731,177,765,826/1,956,589,102,128 (약 37.37%)

$$= \{66.9/74.4 \times 1,092,941,354 / (1,092,941,354 + 700,941,354 + 835,941,354)$$

$$= (66.9 \times 1,092,941,354) / (74.4 \times 2,629,824,062)$$

$$= 73,117,776,582.6 / 195,658,910,212.8$$

$$= 731,177,765,826 / 1,956,589,102,128$$

○ D : 559,244,765,826/1,956,589,102,128 (약 28.58%)

$$= \{66.9/74.4 \times 835,941,354 / (1,092,941,354 + 700,941,354 + 835,941,354)$$

$$= (66.9 \times 835,941,354) / (74.4 \times 2,629,824,062)$$

$$= 559,244,765,826 / 1,956,589,102,1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피고는 2008. 9. 6.부터 원·피고, C, D의 공유재산인 I빌딩과 L빌딩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익을 얻었으므로, 위와 같이 얻은 임대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08. 9. 6.부터 2014. 12. 31.까지 얻은 임대수익은 피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I빌딩의 경우 272,830,553원이고, L빌딩의 경우 228,180,113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504,880원(= I빌딩의 임대수익 상당 부당이득 27,502,956원(= 272,830,553원 × 원고의 공유지분 10.0806%) + L빌딩의 임대수익 상당 부당이득 23,001,924원(= 228,180,113원 × 원고의 공유지분 10.0806%))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피고, C, D, E에게 모 G에 대한 주민세 2,208,920원과 가산금 1,020,260원 합계 3,229,180원이 부과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5,836원(= 3,229,180원 ×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2010. 7. 22.부터 원·피고, C, D의 공유재산인 I빌딩 3층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10. 7. 22.부터 2015. 10. 22.까지 63개월 동안의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12,701,556원(= I빌딩 3층의 월 차임 200만 원 × 원고의 공유지분 10.0806% × 63개월)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63,852,272원(= 50,504,880원 + 645,836원 + 12,701,556원)에서 뒤에서 보는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 및 상계항변) 중 원고가 인정하는 3,317,814원(= 피고가 2008. 9. 10.부터 2015. 10. 10.까지 세무기장료로 ○ 세무사에게 지출한 11,720,000원 중 원고의 공유지분 10.0806%에 해당하는 1,181,446원 + 피고가 I빌딩에 입주한 P 교회의 수리비로 지출한 878,000원 중 원고의 공유지분 10.0806%에 해당하는 88,508원 +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납부한 I빌딩과 L빌딩의 2013년, 2014년분 재산세 합계 2,047,860원)을 뺀 나머지 60,534,4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I빌딩, L빌딩 임대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피고가 2008년 9월 이후 I빌딩과 L빌딩을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차임을 지급받아온 사실, 2008년 9월 이후 I빌딩과 L빌딩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이 10.0806%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와 협의 없이 I빌딩과 L빌딩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자신의 지분 범위를 넘는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원고 지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9.부터 2014. 12.까지 받은 차임 중 원고의 공유지분인 10.0806%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I빌딩과 L빌딩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차임 외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그 금액을 모두 피고가 지급받은 차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9.부터 2014. 12.까지 I빌딩과 L빌딩을 관리하면서 별지 2 '피고의 임대수익' 기재와 같이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피고가 사업자로서 직접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근거서류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에 나타난 임대소득을 실제 수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피고가 I빌딩과 L빌딩을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얻은 임대수익 합계 410,649,046원(228,649,046원 + 182,000,000원) 중 원고의 공유지분 10.0806%에 해당하는 41,395,887원(= 410,649,046원 × 10.080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 의무가 있다.

2) 주민세 대납에 따른 구상금채권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18. 모친 G의 상속인들인 원·피고, C, D, E에게 부과된 주민세 3,229,180원(= 세액 2,208,920원 + 가산금 1,020,2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민세 3,229,180원 중 피고 부담부분인 645,836원(= 3,229,180원 ×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I빌딩 3층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피고가 2010. 7. 22.부터 2015. 10. 22.까지10) 원·피고, C, D의 공유재산인 I빌딩 3층 중 2/3를 주거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가 제12, 29, 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I빌딩 3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2/3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나머지 1/3의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고가 I빌딩 3층 전체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2010. 7. 22.이 아닌 2010. 10. 1.부터 I빌딩 3층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0. 7. 22. I빌딩 3층에 전입한 것으로 스스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와 협의 없이 I빌딩 3층 중 2/3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자신의 지분 범위를 넘는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원고 지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10. 22.까지 63개월 동안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 중 원고의 공유지분인 10.0806%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I빌딩 3층 전체의 차임이 월 2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467,703원(= 200만 원 × 2/3 × 63개월 × 10.0806%)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앞서 인정된 부당이득 및 구상금 합계 50,509,426원(= 41,395,887원 + 645,836원 + 8,467,7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 및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1) 피고는 I빌딩을 관리하던 중 망인이 I빌딩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2005. 9.경부터 2007. 10.경까지 이자 합계 51,643,377원, 신한은행에 의한 임의경매 취하 비용 등으로 4,670,120원,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421,413,000원을 지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77,726,497원(51,643,377원 + 4,670,120원 + 421,413,000원) 중 원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19,431,624원(= 477,726,497원 × 1/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① 피고는 2008. 9.부터 2015. 10.까지 망인의 상속재산 등 세금신고에 관하여 세무사 O에게

세무기장료로 합계 11,720,000원을 지출하였다. ② 피고는 I빌딩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9. 6.과 2009. 11., 2010. 1.과 2010. 7. 배관 및 일부 출입구 변경, 보수공사, 2010. 8.부터 2010. 10. 중순까지 옥상방수공사, 1층부터 옥상까지 계단 바닥 도색, 1층 화장실 리모델링, 3층 리모델링 공사 등 비용으로 합계 82,900,000원을 지출하였다. ③ 피고는 I빌딩의 도배 및 바닥재 공사비용으로 7,580,000원을 지출하였다. ④ 피고는 I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P 교회의 보수비용으로 위 교회의 담임목사 Q에게 878,000원을 지급하였다.11) ① 내지 ④의 각 비용은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계 103,078,000원(= ① 11,720,000원 + ② 82,900,000원 + ③ 7,580,000원 + ④ 878,000원) 중 원고의 공유지분인 10.0806%에 해당하는 10,390,8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2014. 7. 31. 및 같은 해 10. 8. 원고 앞으로 부과된 I빌딩 및 L빌딩의 2013-2014년분 재산세 합계 2,047,86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47,8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1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2건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11,302,064원(= 7,223,750원 + 4,078,3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4547	2007. 11. 30.	원고는 피고에게 7,223,750원을 지급하라.	2007. 12. 25.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9119	2007. 11. 30.	원고는 피고에게 4,078,314원을 지급하라.	2007. 12. 25.

5) 피고는 2008. 9.부터 2016. 2.까지 I빌딩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합계 4,160,510원, L빌딩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4,048,170원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위 환경개선부담금의 합계액인 8,208,680원(= 4,160,510원 + 4,048,170원) 중 원고의 공유지분인 10.0806%에 해당하는 827,484원(= 8,208,680원 × 10.080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원고가 1998. 9.부터 2003. 4.까지 원·피고와 C, D, E의 공유재산인 J빌딩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얻은 임대수익 중 피고의 지분 상당인 54,845,714원 중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상계적상에 있었던 37,235,7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계 181,235,670원(= 119,431,624원 + 10,390,880원 + 2,047,860원 + 11,302,064원 + 827,484원 + 37,235,7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채권으로 원고 주장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 내지 공제한 나머지 130,541,9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구상금채권 가) 이 사건 합의 이전 지출한 이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1. 9. 26.경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I빌딩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피고가 I빌딩을 배타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2005. 9.경부터 2007. 10.경까지 위 차용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가 합계 51,643,357원¹³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신한은행에 위 기간 동안의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신한은행에 위 기간 동안의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피고가 같은 기간 동안 I빌딩을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지급받아 온 차임으로 정산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이 사건 합의 이후 지출한 원리금 및 경매취하비용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8호증, 을가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1. 9. 26.경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I빌딩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신한은행은 2008. 6. 5.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는 2008. 11. 6. 신한은행의 위 경매신청취하를 위한 비용으로 합계 4,670,12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가 2008. 11. 6.부터 2009. 5. 19.까지 신한은행에 위 대출금 및 이자 합계 421,413,000원을 변제한 다음 2009. 5.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취하시키도록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피고 및 C, D, E에게 공동상속 된 신한은행에 대한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 위한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 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를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한 경우 그들 내부적으로는 약정한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채무를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도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약정에 따른 내부적 분담비율을 대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약정한 분담비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채무소멸을 위하여 출연한 금원 합계 426,083,120원(= 4,670,120원 + 421,413,000원) 중 원고의 분담비율인 10.0806%에 해당하는 42,951,734원(= 426,083,120원 × 10.080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I빌딩의 시가에서 보증금과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재산분할가액으로 산정한 점을 들어 피고가 대위변제한 대출금은 I빌딩이 매매 등으로 환가되는 경우 최우선 변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고, 원고나 다른 상속인들의 채권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빌딩에 대한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가 소멸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대위변제자임을 주장하면서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 당시

상속재산분할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I빌딩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것은 상속분 계산을 위한 순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재산 관리비용에 대한 구상금채권 ① 피고가 2008. 9.부터 2015. 10.까지 망인의 상속재산 등 세금신고에 관하여 세무사 O에게 세무기장료로 합계 11,7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을가 제12호증 기재만으로 피고가 I빌딩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9년 6월과 11월, 2010년 1월과 7월 배관 및 일부 출입구 변경, 보수공사, 2010년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옥상방수공사, 1층부터 옥상까지 계단 바닥 도색, 1층 화장실 리모델링, 3층 리모델링 공사 등 비용으로 합계 82,9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을가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빌딩의 도배 및 바닥재(데코타일) 공사비로 2010. 10. 20. 758만 원이 소요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0. 7. 22.경부터 I빌딩 3층에서 거주하여 온 점에서 위 공사비용은 피고의 개인적인 주거목적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비용이 I빌딩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피고가 I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P 교회의 보수비용으로 담임목사 Q에게 87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I빌딩 등 상속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12,598,000원(= ① 11,720,000원 + ④ 878,000원) 중 원고의 공유지분인 10.0806%에 해당하는 1,269,953원(= 12,598,000원 × 10.080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I빌딩, L빌딩에 대한 재산세 대납에 따른 구상금채권 피고가 2014. 7. 31. 및 같은 해 10. 8. 원고 앞으로 부과된 I빌딩 및 L빌딩의 2013-2014년분 재산세 합계 2,047,860원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47,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결금채권 을가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454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7,223,7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9119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4,078,31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2007. 12.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7, 8, 9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2005. 12.경까지 I빌딩과 J빌딩을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얻은 임대수익 중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인 사실, 이 사건 합의 당시 E은 원고가 2005. 12.경까지 J빌딩과 I빌딩을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얻은 임대수익과 그 이후부터 피고가 I빌딩과 L빌딩을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얻은 임대수익에 관한 정산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모든 상속인이 주고받을 것이 비슷하니 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자고 제안한 사실, 원·피고, C, D, E이 모두 피고의 위 제안에 동의하면서 모든 상속인들 사이의 채권·채무가 정산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사실, 그 결과 당시 진행 중이던 위 임대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모두 취하되었고, 피고, C, D도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4547, 2005가합19119 확정판결의 집행을 포기한 사실¹⁴⁾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액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행을 구하거나 집행에 이르지 아니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I빌딩, L빌딩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대납에 따른 구상금채권 올라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공유재산인 I빌딩과 L빌딩을 관리하면서 2008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별지 3 '피고의 환경개선부담금 지출내역' 기재와 같이 위 각 빌딩에 관한 환경개선부담금 합계 8,208,680원(= 4,160,510원 + 4,048,170원)을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 합계 8,208,680원 중 원고의 공유지분인 10.0806%에 해당하는 827,484원(= 8,208,680원 × 10.080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J빌딩 임대수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피고는, 원고가 1998. 9.부터 2003. 4.까지 J빌딩을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얻은 임대수익 중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하나, 위 제4)항 판결금채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모든 상속인들 사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0,509,426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47,097,031원(= 42,951,734원 + 1,269,953원(원고가 자인하는 부분) + 2,047,860원(원고가 자인하는 부분) + 827,484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원·피고의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고의 2015. 11. 19.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5. 11. 19. 무렵 위 각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이르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47,097,031원 상당의 채권으로 원고의 위 50,509,426원 상당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3,412,395원(50,509,426원 - 47,097,031원)이 남게 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12,3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6.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혁중

판사박현숙

판사박승혜

별지

인한 경매를 말한다.

2) 11억 9,5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3)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원·피고, D, E을 상대로 I빌딩, K동 주택, L빌딩, M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소이다.

4) C은 E을 상대로 I빌딩, K동 주택, L빌딩, M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원·피고, D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구하였다.

5)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 지분 7.5%와 피고 및 C, D 지분 66.9%를 합한 수치이다.

6) 분수로 표시되는 원고 지분의 분모를 피고 및 C, D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분자와 분모에 동일하게 2,629,824,062를 곱해준다.

7)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및 C, D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지분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원고의 지분 7.5%와 피고 및 C, D의 지분 66.9%를 합한 74.4% 중에서 피고 및 C, D 지분 66.9%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및 C, D이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지분이 된다.

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및 C, D이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66.9/74.4 지분 중 피고가 차지할 지분을 서울고등법원 2005브46 상속재산분할 결정에서 정한 피고 및 C, D 사이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C, D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9) 위와 같은 산정한 원·피고와 C, D의 지분을 합산하면 1이 된다.

(=197,236,804,650/1,956,589,102,128 + 468,929,765,826/1,956,589,102,128 + 731,177,765,826/1,956,589,102,128 + 559,244,765,826/1,956,589,102,128)

10) 그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 10. 22.까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만을 구하고 있다.

11) 이 중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부분은 ①, ④이다.

12)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부분이다.

13) 피고는 2005. 9.경부터 2007. 10.경까지 신한은행에게 변제한 대출이자가 합계 51,643,377원이라고 주장하나,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대출이자는 합계 51,643,35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14) 위 각 확정판결은 C, D도 원고를 상대로 하여 동일하게 받았다.